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(전문건설업 등록 등)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(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)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및 동법 시행령 제9조(건설업 등록신청서 심사)·제13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·제16조(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)에 의거 구비서류 적합 및 등록기준 미달여부, 결격사유 유무 검토한 바, 적합으로 판단되어,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후 불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4. 5. 9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업체 공고

1. 대상업체

상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이사	소재지	추가등록업종 (업종등록번호)
주식회사 동방 (110111-*****)	김** 박**	통일로2길 16, 3층 (순화동, AIA타워)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(중구-**-**-**)

2. 공고기간 : 2024. 5. 9.(목) ~ 2024. 5. 23.(목)

3. 공고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(건설업등록의 공고)

4. 공고방법 : 건설업관리시스템(CIS)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

5. 문 의 처 :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(☎ 02-3396-6022). 끝.